

보험목적물의 양도와 통지의무

이성남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

1. 머리말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의 유효한 존속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다음 보험 계약법 및 해당 약관에 따른 면책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불황에 빠진 산업분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의 경우라면 더욱 세밀한 지급심사를 하게 되고, 이런 철저한 심사는 모럴사고 방지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된 사례는 블링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블링장 시설물이 별다른 쓸모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는 모럴사고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사례

甲은 1995. 6. 25 乙소유의 토지 1,000평을 임차 기간 5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하는 토지 임

대차계약¹⁾을 체결하였다. 여기에 甲은 위 토지상에 乙소유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위 건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신축한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甲은 1996. 3. 10 임차한 토지상에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로프패널지붕 단층 운동시설(블링장)을 신축한 다음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²⁾는 약정에 따라 乙소유명의로 등기하였다.

한편 甲은 1997. 7. 8 위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유지하여 오던 중 2000. 5. 10 위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동 보험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보험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3. 문제의 제기

위에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툼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둘째, 피보험이

의 존재여부, 셋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신이 신축한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도 약정하였는 바, 이러한 약정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양도로서 상법 제679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다.

피보험이익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에 관련된 적물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보험목적의 양도

기. 서설

보험목적물의 양도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보험가입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의 의사표시 외에 인도를 필요로 하고, 부동산의 경우와 자동차 등 등록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의 흔의 외에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된다.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을 보험에 불리는 것이고, 피보험 이익은 특히 물건보험이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는 물질요소와 피보험자라는 인적요소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하나의 재화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어 언제든지 그 소유자가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험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보험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보험목적물의 양도의 의의

보험목적물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의 대

상인 목적물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79조). 다시 말하면 끌어내기와 부동산 때대로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체권행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매매 대금의 영수와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상호 교환하는 단계가 물권행위라고 보면 된다. 상법 제679조에 의한 양도는 원칙상 임의양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의 결과 보험목적상의 권리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본조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⁴⁾

다. 보험목적의 양도의 요건

(1)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재

보험목적물이 양도될 때에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 양도시에 실효되었거나 해지되지 않았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는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자는 그 면책사유로 양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다.⁵⁾

(2) 보험의 목적물이 물건일 것

보험의 목적물은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서 물건이란 동산, 유가증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특정 개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특정한 물건에 충돌로 승객분다면 이른바 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겨 새로운 체결된 보험의 보험자로서도 제1보험계약을 일터지 않고 체결하였다. 그리고 물건이 일반적이이다.

(3)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었을 것

보험 목적의 양도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뿐지 아니하나 그것은 물권적 양도이어야 한다. 즉 양도의 체권계약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비로소 보험계약관계가 이전하게 된다. 물건물의 물권적 양도란 이행행위를 위하여 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처분행위

를 말하며 의무부담 행위인 체권행위와 구별된다. 부동산 때대로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체권행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매매 대금의 영수와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상호 교환하는 단계가 물권행위라고 보면 된다. 상법 제679조에 의한 양도는 원칙상 임의양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의 결과 보험목적상의 권리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본조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⁴⁾

라. 보험목적을 양도·효과

(1)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제의 입증이 없는 한 양수인이 피보험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목적의 양수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약관변경증거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계약상의 지위이전은 주장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반증을 들어 추정을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을 새로운 보험에 든 경우, 종전 보험관계로 승계된다면 이른바 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겨 새로운 체결된 보험의 보험자로서도 제1보험계약을 일터지 않고 체결하였다. 그리고 물건이 일반적이이다.

(2) 책임보험과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본 조는 손해보험중 원칙상 물건보험이 적용되므로 특정 보험목적이 없이 피보험자의 책임자산에 가해지는 책임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이나 동물 등 양도성이 있는 특정물건과 관련된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이 특정한 물건에 부수하는 위험을 담보한다는 특성상 본 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이 일반적이이다.

(2) 선박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와 선박의 관계가 중시된다. 그래서 상법 제703조의 2에서는 선박이 양도되면 당연히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부보면 보험목적과 피보험자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역시 자동차

의 청문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보험관계도 보험목적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의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면 보험관계도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상법은 민법상의 주된 종들이론을 본받아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면 보험관계도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승계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모든 보험에 승계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승계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칙을 따로 두고 있다.

(1) 책임보험

본 조는 손해보험중 원칙상 물건보험이 적용되므로 특정 보험목적이 없이 피보험자의 책임자산에 가해지는 책임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물이나 동물 등 양도성이 있는 특정물건과 관련된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이 특정한 물건에 부수하는 위험을 담보한다는 특성상 본 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이 일반적이이다.

(2) 선박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와 선박의 관계가 중시된다. 그래서 상법 제703조의 2에서는 선박이 양도되면 당연히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부보면 보험목적과 피보험자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역시 자동차

의 양도시에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관계가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상호회사의 사원의 보험계약 양도
보험법 제57조는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당사자의 의사표시
본 조는 보험계약자 양수인 및 보험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조의 보험목적의 승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체권양도 및 재무의 인수 혹은 보험계약상 지위의 포함적 이전인 계약인수로 보아

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목적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어찌되었든 보험계약의 이전은 보험목적물의 양도인, 양수인 및 보험자의 3당사자의 힘의 측은 양도인 및 양수인간의 합의 및 보험자의 동의로 보험관계를 이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 보험관계 이전의 요건

(1) 보험자에 대한 양도 통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통자의무 해태의 효과

상법 제679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의무반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추궁 기부 및 어떠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상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책임추궁 가능

통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나) 책임내용

- 제1설(상법 제652조 유추 적용설)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제2설(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병합 적용설)
상법 제652조와 함께 제653조를 적용하여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대법원은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지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업직종과 영업직종과 영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의 존부 등이 생겼기 때문에 보험요율에 현저한 차이를 계산하는 바가 없다면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위험을 증가시켜 증가되어 보험요율에 현저한 차이를 계산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의 존부 등이 영업직종과 영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의 존부 등이 영업직종과 영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보았다.

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목적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어찌되었든 보험계약의 이전은 보험목적물의 양도인, 양수인 및 보험자의 3당사자의 힘의 측은 양도인 및 양수인간의 합의 및 보험자의 동의로 보험관계를 이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 보험관계 이전의 요건

(1) 보험자에 대한 양도 통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통자와의 해결

상법 제679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의무반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추궁 기부 및 어떠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상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책임추궁 가능

통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나) 책임내용

- 제1설(상법 제652조 유추 적용설)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제2설(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병합 적용설)
상법 제652조와 함께 제653조를 적용하여 보험

존재하지 않는 물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보험관계의 이전은 상법 제679조의 승계권에 따라 법률상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양도인 양수인의 의사에도 험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제3설(위험변경 · 증가 조건부 해지 가능설)
현저한 위험변경 증기가 없음에도 블통지 자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의 인정은 부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양도로 인해 현저한 위험변경 · 증가가 초래되었음에도 양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도�후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1월 후에는 보험자는 변제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현저한 위험변경 · 증가 사실을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고 폴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4) 대법원의 판례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업직종과 영업직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위 3설에 기까운 견해로 평가된다.

5) 사건
사건으로는 보험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보험관계에 대한 상도인과 양수인간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고 상법규정에 보험관계 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이 사례는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양도통지의무 이행여부, 피보험이익의 존부 등이 생겼기 때문에 보험자는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럴가능성입차기간 만료 시점 등)이지만 방화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甲이 입대처기간 만료 후 입대인에

게 목적물을 명도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상법 제679조 제2항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양도통지의무의 대상은 물권적 양도만을 의미하고 재권적 계약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도약정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보험계약자인 甲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인이 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서 피보험인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주장은 배척되는 것이 타당하다.

6. 예론

가. 서설

이 사례를 보면 甲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임차자 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것을으로 설시(設始)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의 소유이냐 하는 문제와 임차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현행법상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나. 소유권의 귀속관계

임차인 甲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임차장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물권의 원시취득으로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고 하여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은 미등기 건물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 임차인 甲은 임대인에게 매도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소유권은 임차인 甲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의 정성화와 부동신기계약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을 제정하였다.

(4) 명의신탁의 성립
명의신탁의 대상은 공부상 소유권자가 표시되는 재화이다. 따라서 통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불가능하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수탁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가능하고,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한다.

(5) 수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
수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며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그 선의의 약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다만, 수탁자와 제3자와의 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가 척급 기坦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6)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해 소유권이 당연히 수탁자에게 복귀 한다.(판례)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일대 전환을 및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투기, 텔세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기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행위에 당시자로 판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를 험수하여로 내세워 그에게 매입자금을 주고 매도인과 때때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

하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 명의신탁 등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실권자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불권반동도 무효(제4조)로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 甲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등기명의신탁 중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명의신탁은 현행법상 무효로서 여전히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탁자인 임차인 甲에게 있는 것이다. 주 1) 태사자 일별이 상대방에게 봉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처해 치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건물신축 및 토지분할 등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 최초로 행하는 등기 3) 갑선택, 보험법정론(493면) 4) 갑선택, 보험법정론, 494면 5) 손주찬, 생활학(599면 : 청천령, 상법강의(하))(제2판) 584면 6) 정경환, 보법 연구 I, 170~178면 참조

제7자인 조선수사연구소 물리분석과 김운희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과 김운희 교수(서장상 이번 호에서는 쉽니다).